

## 2025년도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 FAQ

- ▶ **(접수 트랙의 구분)** 박사과정수료생 중 일부(병역·출산·육아로 인한 휴학자)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,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e-R&D)을 통한 과제 접수 시, 아래와 같이 **접수 트랙이 2개로 구분**됩니다.

<2025년도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트랙>

트랙명	일반	수료생 중 '21.1.1이후 휴학자
자격요건	박사(석·박사통합) 과정생 및 박사과정수료 후 4년 이내('21.1.1~'25.8.31.)인 자	박사 및 석·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병역·출산·육아로 인해 '21.1.1~'25.8.31 중 휴학기간이 있는 자

-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**박사과정수료생 중, '21.1.1.~'24.8.31. 사이에 병역·출산·육아(만 8세 이하 자녀)로 인한 휴학기간이 있는 신청자에 한해 [수료생 중 '21.1.1이후 휴학' 트랙**으로 신청하시면 되고, 그 외 신청자(박사과정생(석·박사 통합과정생 포함) 및 상기와 같은 휴학기간이 없는 박사수료생(석·박사 통합과정 수료생 포함)는 **[일반] 트랙**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**(KRI 정보입력)**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(KRI) 필수입력사항(기본정보,취득학위 등)을 모두 입력해야 하며,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. **재학생 및 수료생의 경우 KRI에 기본정보 및 취득학위를 직접 입력·수정**할 수 있습니다. (신청요강 ii의 ▶필수항목 참고)

### I. 신청·접수 시 주의 사항

- (신청자격\_2학기 입학예정자)** 2025.9.1.부터 박사학위 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본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
  - **신청 불가합니다.** 연구개시일(2025.9.1.)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
- (신청자격\_석·박사통합과정생)** 석·박사 통합과정생이며 2025.9.1.부터 4학기를 시작합니다.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가요?
  - **신청 불가합니다.** 석·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.
- (신청자격\_수료생1)**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  - 박사과정 수료 후 수료후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 등으로 (박사과정 수료한 대학에) 학적 등록되어 있으며, 수료 후 4년 이내('21.1.1.이후 수료자)인 연구자는 신청\*이 가능합니다.
  - \* 신청에 앞서 대학 연구관리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- 다만 연구개시일 기준, 박사수료생으로 연구등록 예정인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- ※ 연구개시일 기준 연구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4. **(신청자격\_수료생2)** 박사과정 수료 후 출산·육아·병역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.
- 병역·출산·육아(만 8세 이하 자녀)로 인한 휴학기간이 2021.1.1.이후 발생한 경우, 신청자격기간(수료 후 4년 이내)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가 가능합니다.
  - 병역의 경우 복무기간을, 출산·육아의 경우 최대 2년을 신청자격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.
  - 2021.1.1.부터 연구개시일(2025.9.1.)사이 병역·출산·육아에 따른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,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 수료생 중 '21.1.1이후 휴학]트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래는 예시입니다.
  - EX) 2021.1.1. 아이를 출산·육아한 경우 해당 기간(2021.1.1.~2025.9.1.)은 신청자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19.1.1.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면 본 사업에 신청 가능
  - EX) 2022.3.1.~2023.8.31.동안 군복무를 한 경우 해당 기간(1년 6개월)은 신청자격기간에서 제외하므로 2019.7.1.이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면 본 사업에 신청 가능
5. **(신청자격-학위)** 2025년 1학기 졸업(예정)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사업을 신청 및 수행할 수 있나요?
-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구개시일 이전 박사학위를 기 취득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신청 및 수행이 불가합니다.
6. **(신청자격-취업 여부)** 취업자 및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취업자(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)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, 법인의 대표자 등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, **반드시 연구개시(25.9.1.) 전에 퇴직 및 폐업(휴직·휴업은 불가함)**하는 등 연구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.
7. **(트랙별 선정과제수)** [일반]트랙과 [수료생 중 '21.1.1이후 휴학]트랙의 선정과제 수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?
- 트랙 구분은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접수 및 요건검토가 완료된 후 선정평가 시에는 트랙 구분 없이 진행됩니다. 즉 **트랙별 신청에 따른 선정의 유/불리가 없습니다.** 다만 트랙을 오인하여 신청하는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연구자 접수가 완료된 뒤에는 트랙 변경이 불가합니다. 다만 신청기간 중이면 기 신청한 내역을 삭제(포기)한 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
8. **(신청자격-연령제한)** 본 사업에는 연령제한이 있나요?
- 본 사업 신청자격요건으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.
9. **(신청자격-이공분야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동시신청)** 2025년도 이공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신청했습니다.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- 이공분야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과 **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.**
  - ※ 향후 신청 내역 확인 시, 접수 취소 등 조치 예정

10. **(추천서 및 추천자 역할)**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**추천서**가 필요합니까? 추천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?
- 신청요강 내 추천자 확인서는 필수 신청 요건이며 반드시 제시된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- 추천자는 지도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전임교원으로 연구지도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
  - 추천자는 신청자의 취업 및 연구수행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구개시 및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. 또한 연차보고서 제출 시 추천자 의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(연차보고서 양식 추후 공지)
11. **(추천자\_연구수행 중 변경가능 여부)** 연구수행 중 추천자 변경이 가능한가요?
- 연구수행 중 추천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.
12. **(주관연구기관 확인서)**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?
- **주관기관 확인서**를 작성해야 합니다.(신청요강 [붙임5])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자는 접수 시 해당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- 반드시 제시된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.
13. **(신청자격-주관기관)**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을 정하지 않거나, 한국연구재단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?
- **불가합니다.** 본 사업은 국내 대학에 재학(소속)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관연구기관은 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.
  - 또한 주관기관은 소속 대학으로 한정하며, 부설연구소 등으로 신청 시 연구수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 간혹 대학 내 연구비중앙관리부서(산학협력단 등)에서 해당 기관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과제 승인 등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
14. **(주관기관별 신청 인원 제한)** 대학별로 신청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?
- 대학별 신청인원 제한은 없습니다.
15. **(네거티브 평가자 상피제도)** 과제 신청 시 기재할 수 있는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 제도(배제심사자)란 무엇인가요?
- 과제를 신청할 때 기피하는 연구자를 최대 2명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연구자는 평가에서 배제됩니다. 단, 네거티브 평가자 상피 입력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

## II. 2책 3공 및 회계연도 일치 관련

1. **(2책 3공)** 2책 3공이 무엇인가요? 사업군 별로 신청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

- 2021.1.1.부터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에 따라, 연구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로 합니다.(3책 5공) 다만, 위 수행가능 과제 수 중(즉, 3책 5공 이내에서) **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3개까지 수행이 가능하며, 이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 이내로 합니다.(2책 3공)**
- 상기의 “2책 3공”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개의 군으로 구분·지원하고 있으며, 연구책임자의 경우 각 사업군별로 1개 사업만 신청·수행하실 수 있습니다.

개인 및 공동연구군	집단연구군	성과확산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석사·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</li> <li>·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(A,B유형)</li> <li>· 개인연구지원(신진·중견)</li> <li>· 공동연구지원(국내·해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인문사회연구소</li> <li>· 인문한국지원사업(HK+, HK 3.0)</li> <li>· 사회과학연구(우수연구집단육성, 글로벌아젠다)</li> <li>·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(연구그룹 연구소지원형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명저번역</li> <li>· 저술출판</li> </ul>

2. **(신청자격-B유형 동시신청)** 2025년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과 2025년도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**불가합니다.** 동일한 사업군에 속해 있는 사업은 1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**[중요!](회계연도 일치)**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의 경우, 회계연도 일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, 회계연도 일치가 무엇인가요? 또 연구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?

- 회계연도 일치란 정부의 예산절감 및 대학 회계연도와의 추진일정 연계를 위해, 사업연도를 회계연도와 일치시키기 위한 방침입니다.
- 연구계획서는 전체 연구기간의 연구활동 계획을 염두에 두고 각 연차별 사업내용을 작성합니다.
- 연차에 따라, **연구비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.**

총 연구기간	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연차 구분
2년(24개월)	1차년도(6개월 <sup>50%</sup> ) / 2025.9.1.~2026.2.28
	2차년도(12개월 <sup>100%</sup> ) / 2026.3.1.~2027.2.28
	3차년도(6개월 <sup>50%</sup> ) / 2027.3.1.~2027.8.31

### Ⅲ. 연구활동 계획서 작성 시 주의 사항

1. **(연구기간-2년)** 연구기간을 선택할 수 있나요?
  - ➔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은 연구기간이 2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연구활동계획서는 2년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하며,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.
2. **(연구활동 계획서-유사주제)** 전년도 사업에 신청했지만 미선정되었습니다. 전년도와 동일한 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되나요?
  - ➔ 미선정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유사한 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,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발전된 내용을 포함하시기를 권합니다.
3. **(연구활동 계획서-작성 언어)** 연구활동 계획서는 꼭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?
  - ➔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작성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,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문으로 작성하시는 것 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.
  - ➔ 단, 평가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어 및 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의 경우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또한 연구요약문의 경우 선정 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고,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 중 “한글로 작성”으로 명시된 부분 역시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**(연구활동 계획서-공개평가)** 본 사업은 무기명평가(Blind Review) 인가요?
  - ➔ 아닙니다. **본 사업은 공개(오픈)평가로 진행됩니다.** 본 사업은 우수한 박사급연구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를 위해 연구자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자 공개평가로 진행합니다.
5. **(대표연구실적 요약문)**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표연구실적의 기준이 궁금합니다. 대표연구실적이 저서인 경우 우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?
  - ➔ 대표연구실적은 기간에 상관없이 현재까지의 실적 중 가장 우수한 성과 1가지를 요약하여 증빙과 함께 연구사업통합정보시스템(e-R&D)에 파일로 탑재하시면 됩니다. (석사 학위 논문도 제출이 가능합니다.)
  - ➔ 증빙에 대한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, 해당 연구업적 1종의 원문 전체를 PDF 파일로 탑재하여야 합니다. (편집이 가능한 한글 버전 등의 파일 형태 제출 불가)
  - ➔ 또한 본 사업은 공개(오픈)평가이므로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기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  - ➔ 대표연구실적 요약문은 반드시 제시된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.

6. **(신청자격-대표연구실적)** 대표연구실적 중 논문은 KCI 등재후보지 이상 또는 SCI급 (SCI(E), A&HCI·SSCI, SCOPUS)이어야 하나요?  
 → 논문 게재 학술지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은 없습니다.
7. **(신청자격-게재예정인 대표연구실적)** 현재 투고 중인 논문이 신청 마감일 이후에 학술지 (등재지)에 논문 게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 경우 대표연구실적으로 작성해도 될까요?  
 → 인정되지 않습니다. 신청마감일까지 게재가 완료된 경우에만 대표연구실적으로 인정합니다. 마찬가지로 저·역서의 경우, 신청마감일까지 출판이 완료되어야 하고 특허의 경우 등록 특허만을 인정합니다.
8. **(선정 시 비수도권 40% 할당)** 본 사업에 비수도권 우대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 
 →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과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학술연구의 지방 균형 발전 및 지역대학의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**선정 과제 수의 40%를 비수도권 과제에 할당**하고 있습니다.  
 → 지역 할당 기준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재지로, 주관기관의 소재지가 서울, 인천, 경기인 경우 "수도권"으로 분류되고,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"비수도권"으로 분류됩니다.  
 → 지역 캠퍼스의 경우 본교 캠퍼스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.  
 → 다만, 『고등교육법』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설립·운영 중인 분교 등은 해당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.

## IV. 기타 사항

1. **(간접비)** 간접비는 연구자가 사용 가능한 금액인가요?  
 → 그렇지 않습니다. 간접비는 전액 주관연구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으로, 주관연구기관의 과제관리를 위해 해당 기관(산학협력단\*)에 지급합니다.  
 \*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(산학협력단 등)에 지급
2. **(강의진행여부)** 연구를 진행하면서 강의를 해도 되나요?  
 →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의 목적은 연구자의 역량증진을 위한 "연구활동 지원"이기 때문에 취업자(건강보험 직장가입자)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시간강의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경우 연구수행이 중단됩니다.
3. **(학생인건비 중복수혜)**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?  
 →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수행과제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월 250만원 이내이므로 월 25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**(IRB심의 관련)** IRB심의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?

→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,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\* 인간대상 연구란 “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”이며, IRB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.

→ 과제 선정 후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의 IRB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소속기관별 절차에 따라 IRB심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, IRB 심의결과 제출·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 연구기관(IRB포함)에서 담당합니다.

→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IRB 심의대상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**IRB 관련 사항은 소속 기관의 IRB 심의위원회에 문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 : 각 대학 IRB심의위원회(단, 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으로 문의 [www.nibp.kr](http://www.nibp.kr))

5. **(연구자 윤리1)**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경우 “연구윤리 교육”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→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‘연구윤리 교육’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→ 단 ‘연구윤리 교육’을 기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(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재이수 필요)

→ 연구윤리 교육운영 기관: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

※ 연구윤리 교육신청 홈페이지: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(<https://alpha-campus.kr/>)

※ 이수 과정명: “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(인문사회계)” (과정명은 변동될 수 있음)

※ 본인의 연구자번호를 바르게 입력한 뒤 이수하여야 해당 이수정보가 정상적으로 연계됨

6. **(연구자 윤리2)** 성희롱-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과제 참여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에 과제가 중단되니까?

→ 본 사업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가 성추문과 같은 사회적 물의와 관련된 사실로 공식적으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참여역할과 상관없이 과제 수행이 중단되며 협약 해지됩니다.

7. **[중요]** **(주관연구기관 확인사항)** 소속 기관에서 연구자의 신청자격 부합 여부를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나요?

→ 신청요강 붙임5. 주관연구기관 확인서(신청자격요건 확인서)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이 본 사업의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→ 특히, **각 트랙별 자격사항(일반/수료생 중 '21.1.1이후 휴학자)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→ 아울러,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(e-R&D)에 업로드 한 **연구활동 계획서 파일에 오류** (PDF 모아찍기, 작성되지 않은 파일 등)가 없는지, **제출서류(추천서,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관련 증빙자료, 주관기관 확인서)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